

기지 시설물 및 조경관리용역 과업지시서

제1장 일반사항

제1조(총칙)

부산-김해경전철(주) (이하 “발주자”이라 한다) 차량기지 시설물 관리용역의 주요 대상과 관리 요령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대상에 대하여 위험이나 고장 없이 관리되도록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에너지 절약 관리에도 힘써야 한다.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장비의 유지보수와 조경관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업무의 적용 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차량기지의 냉·난방(가스튜브히터 포함), 도시가스, 폐수처리, 공조(환기), 위생, 압축공기설비, 자동제어설비(기지 설비 관련)와 그 부대설비 일체에 대한 운전, 일상관리 용역에 따른 제반사항 및 조경 시설물, 수목, 잔디 지피 등 기타 일체의 유지관리에 적용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규정, 고시,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3조(관계법령)

- ① 산업안전보건법
- ② 근로기준법
- ③ 철도안전법(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관리)
- ④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⑤ 하수도법
- ⑥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⑦ 도시가스사업법
- ⑧ 대기환경보전법
- ⑨ 물환경보전법
- ⑩ 기타 관계법령

제4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어떠한 이유로도 하도급 할 수 없다.

제5조(업무내용)

① 법정관리자 선임

1. 본 과업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자격 또는 면허를 요하는 분야는 반드시 과업 수행 전에 자격 또는 면허소지자를 선임 배치하여 담당 업무에 종사케 하여야 하며, 선임된 자격 또는 면허소지자를 “법정관리자”라 한다.
2. “법정관리자”은 본 계약 체결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련기관에 선임 신고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선임신고 내용은 자격 또는 면허증 사본을 포함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 기간 내에 “법정관리자”의 선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고 선·해임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 선·해임 날짜는 적법한 기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법적 자격 및 조건구비와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4. “법정관리자”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복무하고, 담당업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며 제반 보고사항도 이에 준한다.

② 시설물 점검 및 보수

1. “계약상대자”는 수시 및 정기적으로 설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완전 보전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거나 예견될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전체 또는 일부설비에 대한 정밀점검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정밀 점검결과 용역업무 사항은 지체 없이 예방 정비 및 보수조치 하여야 한다.
3. 수질측정 등 모든 시설물의 점검, 검사 및 시험은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자체 실시한다.
4. “계약상대자”는 주요장비의 보수 등 이력에 대한 사항을 필히 보고하고 예방정비 등 기계설비 수명연장 및 성능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설비 관련 각종 보고서(점검, 보수, 운전, 사고 등) 용역대가 청구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법정안전검사 장비(호이스트, 공기압축기실 리시버탱크, 기계실 압력탱크, 보일러, 냉동기, 도시가스)는 검사일자 도래 전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검사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제반 업무 수행 및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7. 세관 필요 장비는 매년 오버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8. 각종 설비를 항상 운전 가능하도록 점검 및 보수를 시행하고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며, 이상 유무를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9. 원칙적으로 기계실, 장비실, 건물 내, 외부 설비관련 공간은 자체적으로 청소를 실시한다.
10. 감독기관 등 각 사무실의 인력수급에 따른 사무공간의 변동과 관련된 업무에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 차량기지 주요설비(시설물) 현황은 첨부 #1과 같으며 각 설비에 대한 보수관리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각종 계기류 및 램프류 작동상태 : 작동시 및 수시
 - 작동시 이상열 및 이상음 발생여부 : 수시
 - 각종 안전장치 및 스위치류 작동상태 : 작동시 및 수시
 - 각종 슬라이드 및 마찰면, 전기접점 마모상태 : 월1회 이상
 - 각종 필터류 및 윤활유 오염상태 : 월1회 이상
 - V벨트 장력상태 : 월1회 이상
 - 배전반내 전기용품류 절연저항 측정 : 월1회 이상
 - 기타 각 기계설비의 정상적인 성능 발휘를 위해 필요한 사항
 - 단, 각 기계설비의 주요장치 및 일반기계설비는 취급설명서에 없는 사항이라도 운전 및 보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구하는 사항은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 관리

1. 시설물의 적정 기능유지와 관련 법 준수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자체 또는 외부 위탁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현장 비치 관리하고 중요사항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한다.
 - 냉각탑 수처리제 투입(하반기 5개월) 및 냉각탑 보수(1회/년)
 - 지하수 수질영향평가 실시(펌프 보수 및 수질검사)(1회/5년)
 - 지하수 2공 수질검사(1회/2년)
 - 고압가스(냉동기) 검사 실시 (1회/년)
 - 냉온수기 세관(연1회)
 - 도시가스 정기 검사 실시(연1회)
 - 폐수처리약품(황산알미늄, 가성소다 등) 투입(연중)
 - 보일러 청관제(소금 포함) 투입(연중)
 - 보일러(4대) 계속사용(성능,안전)검사 실시(세관포함)

- 시수, 정수물탱크청소(2회/년) 및 수질검사(1회/년)
 - 폐수슬러지 처리(2회/년)
 - 폐수 방류수 수질측정 전문기관 의뢰 시행(1회/월)
 - 폐수 A/C필터 및 SAND필터 교체(1회/2년)
 - 냉온수기 세관 및 용액 검사(1회/년)
 - 보일러 연소비 조정(외주)(연1회)
 - 공기압축기(2대) 정비(오일보충 및 필터교체)(1회/년)
 - 호이스트 법정점검(1회/2년)
 - 압력용기 검사(1회/2년)
 - 정압기 분해점검(1회/2년)
 - 보일러, 냉온수기 배출가스 분석(검사)(1회/6개월)
 - 관제실용 냉동기 오일교체(1회/2년)
 - 냉각수, 냉온수 순환펌프 보수(1회/년)
 - 공조기 증발핀 세척(1회/년)
 - 부스터펌프 베어링, 씰 교체(1회/년)
 - 도시가스 감압변 보수(1회/년)
2. 장비 가동시간은 자동제어에 의한 스케줄제어로 설정하며 동절기, 하절기 중 별도 시간조정은 “발주자”의 지시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3. 시설물 점검 주기 및 항목은 유지보수지침서에 따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며 “발주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설물 보수사항 중 “계약상대자”의 자체 보수가 불가능한 중대 사안 발생시 보수/기기 이력 등을 포함한 별도의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수 공사 등 외주처리 업무 필요시 “계약상대자”는 관련 발주, 계약, 준공처리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업무지원, 현장 감독 업무를 시행하고 “발주자”는 비용부담 및 업무추진의 타당성 검토, 준공 승인 업무를 수행한다.
 6. 각종 장비의 필터류(디퓨저 포함)는 정기적으로 세척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미관상 또는 갑작스런 기기 차압발생 시에도 즉각적으로 세척을 실시한다.
 7. 매월 용역대가 청구 시 수행업무보고, 일일업무일지, 당월 실적, 익월 계획, 출근부, 근무계획, 수질검사결과 등 발주자가 확인해야 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8. 중요설비(보일러, 냉온수기 등)의 부품 수명이 도래 시 사전에 객관

적인 자료(점검보수현황, 공인기관의 점검의견 등)를 바탕으로 교체요청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고 교체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조경관리

1. 업무내용은 수목의 전정작업, 잔디깎기, 잡초제거, 약제살포, 기타 수목 및 잔디, 지피 및 퇴비, 보온 그 외 기타의 생육에 관련된 사항, 조경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 등이다.
2. “계약상대자”는 식물의 생리, 생태적 특성에 부합하고 제반문제 발생의 사전 예방 관리를 충실히 해야 한다.
3.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전문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조경학회의 조경관리학에 따른다.
4. 과업 수행 중 조경시설물(벤치, 휴지통, 각종 표지류 등) 및 기타부대시설(매립전선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시설을 해야 하며, 파손 시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구 및 물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단, 약제 살포시 약제 종류 또는 양은 사전 협의에 따른다.
6. 차량기지 유치1,2군 선로주변, 외부 절개지 및 남측 공원녹지를 조경 구역에 포함한다.
7. 조경관리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 또는 기구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 사용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8. 조경관리 작업 후 빈 봉지, 병 등은 철저히 수거하여 재활용, 특정 폐기물에 따른 분리수거 및 처리를 관련법에 맞게 수행하여야 한다.
9. 관리 수목이 고사하면, 동일 목류(교목류, 관목류 등)로 매년 초 2~3월경 교체 식재하되, 자생력이 강한 3년이상 식생 묘목으로 한정하며, 산출내역 금액 내에서 구매하여 식재한다.
10. 조경관리 종류 및 시행주기

구 분	업 무 내 용	주 기(년)	비 고
잔디관리	제초제 살포	2회	4, 6월
	잔디 깎이(에초기)	4회	4,6,9,11월
수목관리	수목전지 및 전정	3회	
	지주목 점검 보수	2회	
	병충해 방제 작업	2회	병충해 발생시
	거름(퇴비)	1회	2월
기 타	기지 주변 배수로 청소	1회	

⑤ 자재 관리

1.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소모 자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발주, 계약, 검수 업무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발주자”는 이를 확인 승인한다.
2. 시설물 점검보수에 필요한 기기, 장비 및 기구와 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자체 부담한다. 단, 소모품이라 함은 그리스, 장갑, 배터리, 판넬용 램프, 휴즈, 절연테이프, 마포 등 소액소모성 자재를 말한다.
3.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자재관리를 위하여 자재창고 내 자재에 대하여 관리대장 및 분류표찰을 비치, 부착하고 필요시 사용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예정 자재의 확보와 긴급 자재구매 필요시 “계약상대자”는 관련 발주, 계약, 검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업무지원, 현장 감독 업무를 시행하고 “발주자”는 비용부담 및 업무추진의 타당성 검토, 최종 검수 승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업무확인 및 금지사항)

-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발주자”의 확인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할 때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발주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차량기지 내의 각종 기밀 및 시설 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3.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사전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
 4. 차량기지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을 “발주자”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5. 차량기지 내 시설 및 설비를 임의로 훼손 또는 파괴하는 행위
 6. 근무태만 또는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불응하는 행위
 7. 작업장 내 위험물을 사전 허가 없이 반입 또는 방치하는 행위
 8. “발주자”로부터 승인되는 앓은 취사, 냉난방용 전기제품(전열기구)를 사용하는 행위
 9.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여 금지하는 행위

제7조(안전관리 및 교육훈련)

-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예방활동 및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설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종사원에게 수시로 실시하여 자질 및 기량향상에 노력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각종 안전 관

련 교육을 실시하여 설비 고장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② “법정관리자” 및 분야별 담당자는 비상 시 모든 설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동절기 설비 동파 예방에도 힘써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각종 설비의 안전관리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⑤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종설비의 운용 및 유지보수, 작업요령,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 및 관리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⑥ 설비 안전관리와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용접, 화재 위험성이 있는 작업 시 소화기 및 불연포, 소화수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 ⑦ 설비 운전, 예방정비, 유지보수 작업요령 및 기술교본과 안전수칙을 제정, 근무현장에 비치하여 작업자가 항상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신규 채용자에 대해 반드시 사전 교육훈련으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⑧ 동절기 동파예방, 폭설 대비, 하절기 폭우/폭풍 대비, 화재예방 등 테마별 예방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사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 ⑨ 관계법령에 의한 법적 자격증 및 면허소지자에 대해 법정교육이 필요할 때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 ⑩ 약제 살포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교대로 작업하며,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 ⑪ 사업장내 특수성을 감안하여 농약, 사용 장비 및 용기는 일정한 장소에서 취급하여야 하고 잔여물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보관장소에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한다.
- ⑫ 잡초제거 등 조경관리 업무 수행중 기지 내 열차운행 구간 및 고압선로, 도시가스 시설 주변 작업시 작업 전 유의사항 및 사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대인, 대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오염 예방)

-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시행하면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적법한 관리 및 처리를 하여야 하며, 관내 환경정비를 철저히 이행하여 환경오염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조경관리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수목, 잔디 등의 예지물은 지정된 장소에 운반, 적재, 처리하여야 하며 그 주변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 ③ 조경관리 작업 중 발생한 모든 부산물은 작업장 밖으로 반출하고 당일 작업 구역의 작업 종료 전까지 정리를 완료하고 “발주자”의 확인 후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 ④ 전정한 나무 가지 및 깎은 잔디, 풀은 빗자루나 갈퀴 등으로 모아서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정리하여 쌓아 두어야 한다.
- ⑤ 전정 작업 시 고사목은 밑 부분까지 잘라 내거나 뽑아서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정리한다.
- ⑥ 고사목 또는 조경관리 후 발생한 부산물(제초작업, 폐목, 가지치기작업 등)은 일정기간 보관 후 적법하게 반출 처리하되, 처리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9조(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 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위한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① 시정 : 본 계약 또는 과업지시서 미 이행시 서면 또는 구두로 조치
- ② 주의 : 시정요구 미이행 시 서면으로 조치
- ③ 경고 : 주의 3회 이상 누적 시면으로 조치

제10조(계약해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① 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되거나, 그 밖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발주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 ② “계약상대자”의 노사분규 등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원활히 이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발주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자”의 시설물 훼손하거나 사고를 야기한 경우
- ④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자”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발주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제11조(기타사항)

- ①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 기간내에 설비의 보수 및 교체가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의 요구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차량기지 주요 시설물, 시설관리용역 근무인원, 법정 선임인원 현황은 첨부와 같으며, 운용중 설비현황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에 대하여도 관리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별도 명기되지 않은 부분이나 상충되는 사항은 상호간의 협의를 통하여 조율할 수 있다.

제2장 계약 특수조건

제1조(용역업무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필요서류(유지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인력운영(자격증빙서류), 보안서약서 등)을 제출하고, 관리소장에게 인력 현황을 확인하여 결원발생 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여야 하며, 사전 배치하여 용역업무 인수인계 및 계약기간 동안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업체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전 기존업체로부터 각종 시설현황 및 점검 등에 대한 업무인수를 확실히 받아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인수인계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차기용역 계약을 체결한 용역관리 업체에게 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인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착수 지연 등)은 “발주자”가 정산 및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종업원에 대한 책임)

“계약상대자”는 전 종업원의 건강, 신원, 풍기 및 작업 규율의 유지, 안전 사고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4조(관리소장의 임무)

관리소장은 종업원들을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중 특이사항에 대하여 관리부서와 관리담당자에게 보고하고 관리부서와 관리담당자의 요청 사항을 “계약상대자”에 전달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와 “발주자”의 업무연락 등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결원 보충)

“계약상대자”는 종업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보충하여 계약 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제6조(복장)

“계약상대자”는 종업원들에게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게 하고, 이름이 명기된 표시를 왼쪽가슴에 부착토록하며, 동복, 춘추복, 하복, 작업복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법령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해당 시설물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되

는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과업지시서 참조)

제8조 (적정임금의 보장)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를 관리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예정가격 산출내역을 기초로 한 직접노무비를 원가계산상의 금액 이하로 임의 감액 조치할 수 없다.
- ②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종업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여야 하며, 계약 내역서상 임금에 대한 지급 확인을 위하여 계약담당직원의 증거서류 열람 또는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였을 경우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매월 지급하는 용역비에서 미지급 임금만큼 감하고 지급할 수 있다.
- ④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⑤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결원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지급)

종업원 결원(결근포함)이 있을 때에는 월 용역비 지급시 결원(결근포함)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감하고 지급한다.

제10조 (계약기간 연장)

이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다음년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때는 상호협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수선(임가공)·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일반조건 외에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 의무 등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22.1.27., 2022.5.27.〉

제2조(적용범위)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2.1.27., 2022.5.27.〉

제3조(안전준수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자”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평가에 적극 따라야 한다.〈개정 2022.1.27., 2022.5.27.〉

제4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을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1.27., 2022.5.27.〉

제5조(통지 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 없이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1.27., 2022.5.27.〉

제6조(안전·보건협의체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개정 2022.1.27., 2022.5.27.〉

제7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2.1.27., 2022.5.27.〉

② “발주자”는 안전지도·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사에 개선계획 및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발주자”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발주자”가 제3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 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⑤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계약 중지 등) ① “발주자”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계약이행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2.1.27., 2022.5.27.>

-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중지로 발생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직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개정 2022.1.27., 2022.5.27.>

제9조(계약해지)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2.1.27., 2022.5.27.>

- 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2022.5.27.>]
- ③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인접작업을 무단작업으로 시행한 경우

- 첨부 : 1. 주요 시설물 현황 1부.
 2. 시설관리 법정 선임인원 현황 1부.
 3. 시설관리용역 근무인원 현황 1부. 끝.

주요 시설물 현황

가. 종합관리동

장 비 명	수량	규 격	비 고
가스직화식냉온수기	2대	276,000kcal/h	종합관리동 냉난방용
냉각탑	2대	직교류형 150CT	종합관리동 가스직화식냉온수기용
증기보일러	1대	정격 500kg/h	종합관리동 가습/급탕용
공기조화기	4대	7,000~30,000CMH	종합관리동 지하1~4층,식당,강당
직팽식공기조화기	1대	9,000CMH	종합사령실 계통
실외기	1대	18.5KW	직팽식공조기용(법정관리대상)
팬코일 유니트	38대	1,860kcal/h	종합관리동 외주부 냉난방용
	39대	2,470kcal/h	종합관리동 외주부 냉난방용
다익형 웬	5대	25,100~1,200CMH	기계실, 화장실 급/배기용
인라인 웬	4대	17,700~8,200CMH	전기실/물탱크실 급/배기용
부스터펌프	2SET	1.5KW×2대, 2.2KW×2대	시수, 정수 가압펌프
순환펌프	8대	다단볼류트	
보급수펌프	2대	입형다단펌프	
기능실 배수펌프	6대	수중형	기계실, 물탱크실, PIT
전기방열기	13대	1,032kcal/h	경비실, 화장실동파방지용
패케이지 에어컨	5대	4,472kcal/h	중앙감시실 냉난방용
핸드 드라이어	13대		각 화장실
시수물탱크	1대	58TON	급수
정수물탱크	1대	171TON	소방, 화장실 변기세척용

나. 폐수처리시설

폐수배출량	폐수처리방법	폐수처리능력	폐수처리가동시간	비고
89.5m ³ /DAY	물리화학적처리	100m ³ /DAY	8시간/DAY, 365일/YEAR	수질검사대상

다. 검수고 및 기타

장 비 명	수량	규 격	비 고
직팽식공기조화기	2대	36,800CMH,25,000CMH	
실외기	2대	121.6KW, 60.8KW	실외기실(법정관리대상)
순환/보급수펌프	14대	다단볼류트 등	기계실
배수펌프	4대	1.5KW×10M×250LPM	기계실
패키지 에어컨	11대	6,200kcal/h,4,500kcal/h	수위실,숙직실, 폐수처리장 등
관류형보일러	1대	1,000kg/h	법정관리대상
관류형보일러	1대	500kg/h	
관류형보일러	1대	1,500kg/h	법정관리대상
벽걸이형보일러	1대	25,000kcal/h	수위실보일러
인라인 웬	12대	22,560~1,200CMH	전기실/기계실 등 급/배기용
가스튜브히터(대형)	4대	258,000kcal/h	주공장 난방용
가스튜브히터(소형)	16대	37,800kcal/h	도착검사고 난방용
전기방열기	8대	1,032kcal/h	화장실, 샤워실 동파방지용
전기방열기	9대	2,150kcal/h	폐수처리장, 자재창고 등
축열식전기온수기	1대	500Lit	경비실
축열식전기보일러	1대	30Lit	경비실
핸드 드라이어	14대		각 화장실
심정펌프	2대	5HP×73M×250m ³ /DAY	종합관리동 정수탱크 용수공급(법정관리대상)
호이스트	1대	2.8ton	폐수처리시설(안전검사대상)

라. 공기압축기실

장 비 명	수량	규 격	비 고
에어컴프레샤	2대	13.07CMM	메인모터 90KW
에어드라이어	1대	31.32CMM	
리시버탱크	1대	3m ³	안전검사대상

마. 도시가스 설비

장 비 명	수량	규 격	비 고
가스계량기	6대		검수고, 종합관리동, 주방 등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13개		검수고, 종합관리동, 주방 등
정압기	1대	0-566N m^2 /h	법정관리대상
압력조종기	1대	0-300N m^2 /h	

바. 위생기구

기구명	합계	관리동					검수동			수위실
		계	1F	2F	3F	4F	계	1F	2F	
대변기	37	16	4	4	4	4	21	11	9	1
대변기-장애인용	7	5	2	1	1	1	2	2		
대변기-(LT절수형)	2	-	-	-	-	-	2	1		1
소변기	12	12	3	3	3	3	-			
세면기	17	17	5	4	4	4	-			
세면기-장애인용	5	5	2	1	1	1	-			
세면기-각형	9	-					9	7	2	
샤워기	60	16	8		8		44	14	30	
청소싱크	10	4	1	1	1	1	6	4	2	
청소수전	9	-					9	7	2	
주방수전	8	8	8				-			

사. 조경관리 현황

구 분	교목류	관목류	잔디	지피및기타	비고
차량기지	2,073주	20,270주	6,333 m^2	9,400주	조경면적: 10,626.53 m^2

시설관리 법정 선임인원 현황

설 비 명	법정자격자	합계	법적근거	비 고
합 계		5명		
보 일 러 설 비	검사대상기기조종자	1명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제49조	
도시가스설비	안전관리자	1명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5조 3항	
폐수처리설비	수질환경기술인	1명	물환경보전법 제47조	
냉 방 설 비	냉동제조시설안전관리자	1명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물 탱 크 설 비	수도시설의 관리자	1명	수도법 제36조	

○ 법정자격 인원은 운용 중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함.

시설관리용역 근무인원 현황

관 리 범 위	구 분	근무 인원	자 격 기 준	비 고
청사면적(조경면적)	14,148 m^2 (10,626.53 m^2)			
중앙관리	현장대리인	1	관련분야 10년이상	
중앙관리동	관련분야책임자	1	공조냉동기능사	법정관리자
	기능사	1	에너지관리기능사	법정관리자
	기능사	1		
폐수처리시설	관련분야책임자	1	환경기능사	법정관리자
검수고/압축기실	관련분야책임자	1	에너지관리기능사	법정관리자
	기능사	1		
도시가스	기능사	1	가스기능사	법정관리자
조경관리	기능사	1	조경기능사	
합계		9		